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3
------------	------

2016. 12.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6. 12. 2.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2016. 12. 5. 회부)

2. 제안이유

-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린 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6년 12월 2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며,

이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열린광장 조례)도 발의된 상태임(의안번호 1564).

- 이 조례에는 위원회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열린광장 조례에 위원회에서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임.
- 최근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형물이라 하면 텐트 등 임시구조물도 포함되므로, 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조형물은 영구조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u>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붙임 1>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붙임 2>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학 전 문 계 가 민	이 선 우 (위 원 장)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교수 · 한국갈등학회회장	
	이 혜 정 (부 위 원 장)	·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권 석 천	· JTBC 보도국장	
	이 재 은	· 서울시 청년허브	
시 민 단 체	김 전 승	· (사)홍사단 사무총장	
	유 성 희	·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위원	
시 의 회	김 용 석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 순 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공 무 원	강 태 응	· 서울시 행정국장	

※ 행정국 자료(위촉기간 : 2016.3.29.~2018.3.28.)